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2381

제안일자 : 2021. 6. 17.
제 안 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위원회 인용 규정 등을 개정사항에 맞추어 수정함

2. 수정 주요내용

○ 위원회 인용 규정에서 ‘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’을 ‘운영위원회의 심의’로 변경하고(안 제8조제3항, 제12조),

○ 위원 참여 제한 규정에서 ‘자문’을 ‘심의·자문’으로 하며(안 제19조제4항),

○ 안 부칙에서 조문 번호 및 제목을 삭제함(안 부칙).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3항 중 “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”을 “운영위원회의 심의를”로 한다.

안 제12조 중 “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”을 “운영위원회의 심의를”로 한다.

안 제19조제4항 중 “자문대상 안건”을 “회의 안건”으로, “자문”을 “심의·자문”으로 한다.

안 부칙은 조문번호와 조제목을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이용료) ① ~ ② (생 략)	**제8조(이용료)** ① ~ ② (현행과 같음)	**제8조(이용료)**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, 공연, 행사 등의 성격·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**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** 거쳐 정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 **운영위원회의 심의를** ------- ------.
④ ~ ⑤ (생 략)	④ ~ ⑤ (현행과 같음)	④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대관료 감면) 시장이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**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**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	**제12조(대관료 감면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.	**제12조(대관료 감면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 **운영위원회의 심의를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
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**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**	**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---------- ---------- **대하여 심의·자문하기 위**	**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(개정안과 같음)

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**한 전시관 운영위원회**----------.	
1.· 2. (생 략)	1.· 2. (현행과 같음)	
〈신 설〉	**3.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**	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	
제19조(회의) ① ~ ③ (생 략)	**제19조(회의)**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**제19조(회의)**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이 **자문대상 안건**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**자문**에 참여할 수 없다.	④ ----------.	④ ---------- **회의 안건**---------- **심의·자문**----------.
	부 칙	**부 칙**
	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**이 조례는** ----------.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”을 “운영위원회의 심의를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”을 “운영위원회의 심의를”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”를 “대하여 심의·자문하기 위한 전시관 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

제19조제4항 중 “자문대상 안건”을 “회의 안건”으로, “자문”을 “심의·

자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이용료) ① ~ ② (생 략)	**제8조(이용료)**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, 공연, 행사 등의 성격·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**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** 거쳐 정한다.	③ ---------- **운영위원회의 심의를** ----------.
④ ~ ⑤ (생 략)	④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대관료 감면) 시장이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**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**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	**제12조(대관료 감면)** ---------- **운영위원회의 심의를** ----------.
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**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**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**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---------- **대하여 심의·자문하기 위한 전시관 운영위원회**----------.
1.· 2. (생 략)	1.· 2. (현행과 같음)

〈신 설〉	3.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제19조(회의) ① ~ ③ (생 략)	**제19조(회의)**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이 **자문대상 안건**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**자문**에 참여할 수 없다.	④ ---------- **회의 안건**---------- **심의·자문**----------.
	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